

제11강 관세감면과 분할납부제도

강 의 : 관세청 정재완 박사



<주요 강의내용>

1. 감면세의 개념
2. 세율불균형물품등의 감면
3. 환경오염방지물품등의 감면
4. 외교관용 물품등의 감면
5. 소액물품 등의 감면
6. 재수출(입)면세
7. 여행자휴대품 등의 면세
8.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
9. 분할납부제도
10. 분할납부의 요건

국세공무원교육원

1. 감면세의 개념

- 개념 : 관세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세액의 전부(면세) 또는 일부를 면제(감세)하는 것
- 관세감면과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감면 : 관세감면시 내국세도 감면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감면은 반드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가능
- ◆ 무조건 감면 : 수입통관 시점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신청을 승인하고 별도의 사후관리를 생략
- ◆ 조건부 감면 : 수입통관 시점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용도에만 사용'하는 등 세관장이 정한 요건이행을 전제로 하여 감면신청을 승인하는 것. 사후관리가 따름

2. 외교관용 물품등의 감면

-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88조)
 -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간 우호관계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교관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
 - 주한 외국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등의 업무용품과 대사, 공사, 영사 등의 자가용품이 감면대상
- ◆ 감면율 : 100%

-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면세(관세법 제91조)
 - 종교단체의 예배용품으로 기증된 물품
 - 자선, 구호목적으로 기증된 물품
 - 국제기구의 국제평화활동/국제친선활동을 위해 기증된 물품
 - 장애인 전용물품으로 기재부령이 정하는 물품(규칙 39조)
- ◆ 감면율 : 100%

3. 정부용품의 면세

-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2조)
 - 국가기관 지자체에 기증된 공용물품
 -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 대통령 경호물품
 - 외국 주둔 국군/재외공관에서 반환된 공용품
 - 정부가 수입하는 물품일지라도 조달시 국산품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수입시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관세납부 대상
 - 국가안보상 필요한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품
 - 정부 직접수입 간행물 등
 - 환경보전을 위한 물품
 - 국정원장이 수입하는 물품
- ◆ 감면율 : 100%

4. 소액물품 면세

◆ 소액 면세(관세법 제94조)

- ▶ 훈장, 기장, 표창장 등 기록문서 등
- ▶ 견본품(천공 절단), 카다로그, 가격표, 250달러 미만 물품
- ▶ 소액물품 : 우리나라 사람에게 기증된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용 물품, 박람회 참가자가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수입하는 물품(cif 5달러 이하)
- ▶ 감면율 : 100%

◆ 용도세율(관세법 제83조)

- ▶ 관세율표나 제50조(잠정세율), 제65조(긴급관세), 제68조(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 제70조(조정관세), 제71조(제72조), 제73조(국제협력관세),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 낮은 세율을 적용한 물품은 수입신고의 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5.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면세

◆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면세(관세법 제96조)

- 입국사유, 체재기간, 직업, 기타(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등)를 고려
-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기준 : 미화 400달러
- 단, 술이나 담배, 향수, 농산물 등은 예외적으로 수량이나 금액을 기준으로 면세범위를 규정

◆ 감면율 : 100%

□ 이사화물(관세법 제96조)

-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기타를 고려
- 사용하던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반입될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면세
- 단, 신품이나 관세청장이 정한 특정물품(자동차, 오토바이, 선박, 항공기, 200만원 이상의 귀금속)은 과세

◆ 감면율 : 100%

□ 승무원 휴대품(관세법 제96조)

- 항해일수, 체재기간, 기타의 사정을 고려, 단, 관세청장이 정한 특정물품(자동차, 오토바이, 선박, 항공기, 50만원 이상의 귀금속)은 과세
- 감면율 : 100%

6. 재수출(입)면세

- 재수출 면세(관세법 제97조)
 - 수입후 1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 필요시 1년 이내에서 재수출기간의 연장이 가능
 - ◆ 감면율 : 100%

- 재수입 면세(관세법 제99조)
 - 일단 수출된 물품이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거나,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단, 수출한 다음 관세를 환급받은 물품이나, 당초의 수출신고 필증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
 - ◆ 감면율 : 100%

7. 세율불균형물품 등의 감면

- 세율불균형 물품의 감면세(관세법 제89조)
 - 세율 불균형 시정 및 기간산업 육성(항공산업, 반도체산업 육성)
 - 유사한 물품 간 세율의 차이가 크거나 중간재보다 최종재의 관세율이 낮은 역관세 물품의 세율불균형을 시정
 - 즉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수리용 물품, 반도체 장비 제조 수리용 부분품과 원재료가 그 대상(기간산업 보호 목적)
- ◆ 감면율 : 100%

- 학술연구용물품의 감면세(관세법 제90조)
 - 학술과 교육의 진흥이라는 문화정책적 목적으로 학술연구개발용품, 교육용품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
 -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학술연구용품, 산업기술의 연구 개발용 물품이 주요 대상
- ◆ 감면율 : 80%. 단, 공공의료기관/학교부설의료기관용품 50%

8. 특정물품의 감면세

- 사회정책 목적상 특정용도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사회복지향상, 국민체육향상, 공공이익추구, 공익사업달성 목적
- 동식물의 종자개량을 위한 품종
-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참가자 용품
- 긴급복구 및 구호용품
- 외국 원수와 구 수행원 용품
- 오염물질 배출방지 처리용 기계, 폐기물 처리용 기계 기구, 산업재해나 직업병 예방 기계 기구에 대한 감면(감면율 : 50%)
-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에 대한 감면(감면율 :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체는 50%)
- 방위산업용 물품에 대한 감면(감면율 : 70%)

9.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의 감면

-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감면세(관세법 제95조)
 - 오염물질 배출방지 처리용 기계, 폐기물 처리용 기계 기구, 산업재해나 직업병 예방 기계 기구에 대한 감면(감면율 : 50%)
 -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에 대한 감면(감면율 :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체는 50%)
 - 방위산업용 물품에 대한 감면(감면율 : 70%)

- 재수출 감면세(관세법 제95조)
 - 임대차 등에 따라 일시적 사용을 위해 수입하여 2년(최장 4년) 이내에 재수출되는 물품, 재수출기간에 따른 감면율
 - 6개월 이내 : 85% 6개월-1년 : 70%
 - 1년-2년 : 55% 2년-3년 : 40%
 - 3년-4년 : 30%

10. 수출용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104조)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수출 등을 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 국내에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물품의 제조 가공을 위한 원재료
 - 외화획득 공사에 사용되는 물품

- 손상 감세(관세법 제100조)
 -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
 - ◆ 가치감소분에 해당하는 관세액과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관세액을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경감

11.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

- 해외 임가공물품에 대한 감세(관세법 제101조)
 -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을 한 다음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국내에서 수출된 원자재 부분을 감세
 - HS 85류(기계와 장비류) 및 카메라(HS 제90류)가 그 대상
 - ◆ 감면율 : 수출된 원자재 및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감세

- 가공 수리한 물품에 대한 면세(관세법 제101조)
 - 물품을 수출하여 HS 10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정도로 가공 또는 수리한 다음 수입할 경우의 감세
 - ◆ 감면율 : 가공 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감세

12. 감면 물품의 사후관리(102조)

□ 대상

- ▶ 세율불균형물품(89조), 학술연구용품(90조),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91조), 정부용품(92조), 특정물품(93조), 환경오염방지물품(95조)
- ◆ 비대상 : 외교관 물품(88조), 소액물품(94조), 여행자휴대품(96조), 재수출/수입 감면세(97조~99조), 손상감세(100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101조)
- ◆ 사후관리 기간 3년 이내(내용연수 5년 이상/3년, 4년/2년, 기타/1년), 타용도 전용 가능성 낮은 물품(1년), 장애인 전용용품(수입신고 수리일까지), 박람회 등(행사종료시까지), 기타

□ 양도

- ▶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양도(사후관리 승계)
- ◆ 타용도 사용자에게 양도 (관세 추징, 양수자 또는 양도자) 경감율 적용

13. 위약물품 환급(106조)

- 개념 : 수입신고수리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할 경우 그 관세를 환급]
- 외국에서 반입한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한 때
- 보세공장 생산품인 경우는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할 때
-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세관장 승인 후 폐기한 때
- 수입신고 수리 후 계속 보세구역에 보관 중에 가치감소 시는 전부 또는 일부 환급
- 분할납부 대상물품으로 관세 납부 전인 경우 부과 취소

14. 분할납부제도

- 개념 :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자금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 분할납부 대상
 - 천재지변
 -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물품
 - 정부, 지자체, 학교, 직업훈련원, 연구소 수입물품
 - 중소기업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 ◆ 분할납부 기간 :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따라 최저 2년6월에서 최장 5년 이내)

10. 분할납부의 요건

- ❑ 시설기계류 등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물품의 요건
 - ① 관세율표상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 ② 관세법 등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
 - ③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단,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 ④ 덤핑방지관세 등 탄력관세 적용대상이 아닐 것

- ❑ 중소기업체가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요건
 - ① HS 제84류, 제85류,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 ②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임을 주무부처의 장 등이 확인한 것일 것
 - ③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 ④ 시설기계류 등의 물품요건 제2항과 제4항의 요건을 갖출 것